2022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

1 법무사관후보생 개요

1. 법무사관후보생이란?

- ❖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·관리 한 후 법무장교로 임용하는 제도
 - ※ 법무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

2. 지원자격

- O 병역판정검사, 현역병 입영,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
- O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
 - * 28세 이하자(94. 1. 1. 이후 출생자)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인 사람
- O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

제10조(결격사유 등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
1의2.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
-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3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의2.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
- 7.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
2 제출 및 처리

1. 지원자(병역의무자) ⇒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에게 제출

- 제출기간 : '22. 3. 11.(금) ~ 3. 31.(목)
- O 제출서류
 - △ 현역·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(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), 신원진술서(A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A),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용정보조회서
 - * 기본증명서(상세):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
 - *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.) (경로)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→ 내 신용정보열람(크레딧포유)
 - ※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(병무뉴스→공지사항) 참고

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'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' 추가 제출

O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

△ 현역·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

- 학력사항 : 소재지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 표기

- 지원사항 :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

-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△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A)
 -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, 반드시 성명 기재, 서명날인
- ※ 지원서, 신원진술서,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

2. 법학전문(1학원의 장→이음(e-un)포탈 지원 접수(등록) 후 지원서류 우편 제출

- ① 병무청유관기관홈페이지(이음포탈, http://e4c.mma.go.kr) 지원 접수
 - △ 접수기간: '22. 3. 11.(금) ~ 3. 31.(목)
 - △ 지원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이상 여부 재확인
 - △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
 -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 담당자 사항 등록되어야 로그인 가능(접수 기간 이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)
 - * 접수기간 이전에 수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'병무행정 정보체계사용 (변경·취소)신청서' 접수, 유관기관 사용자로 등록되어야 접수 가능

☞ 접수 경로

이음포탈(http://e4c.mma.go.kr) \Rightarrow 장교후보생지원자등록 \Rightarrow 법무사관후보생

- ② 문서 제출(온-나라 전자문서)
 - △ 기 간 : '22. 3. 31.(목) 까지
 - △ 붙임 서류 : 2022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(excel)
- ③ 지원서류 제출(우편 접수)
 - △ 제출기간 : '22. 3. 11.(금) ~ 4. 5.(화)
 - ※ 3.31.까지 이음포탈에 지원 접수(등록)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서류 우편 제출(4.5.까지) 최종 인정
 - △ 지원자 명단(성명 가나다 순 주민등록번호순) 순으로 개인별 '클립'편철
 - ※ 지원서류 개인별 순서
 - ① 현역·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(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), ② 신원진술서(A)
 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A) ④ 기본증명서(상세)
 - ⑤ 신용정보조회서

- *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.) (경로)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→ 내 신용정보열람(크레딧포유)
- △ 우편 주소 【우편번호 35208】
 -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입영과 법무사관후보생 담당

3 대한 안내사항

-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,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
 - △ 「병역법 시행령」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
 - 제한연령(30세)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
 -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
 -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
 - △「군인사법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
- O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: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
 - △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**현역 법무장교 선발・입영**
 - △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